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52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황정아·강준현·복기왕

이재관 · 김성회 · 조승래

박지원 · 오세희 · 박희승

황명선 • 양부남 • 박정현

최민희 · 정성호 · 임호선

박용갑 • 이광희 • 강유정

장종태 • 민형배 • 박범계

장철민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·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,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"및"을 "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와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우주항공청의 설치 등) ①	제6조(우주항공청의 설치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	4
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	
술의 연구개발 <u>및</u> 우주항공산	<u>관</u> 련 사업을 담
업의 육성・진흥 관련 사업을	<u>당하는 본부와</u>
담당하는 본부를 둔다. <u><후단</u>	
<u>신설></u>	<u>이 경우 우주</u>
	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
	업을 담당하는 본부의 소재지
	는 대전광역시로 한다.